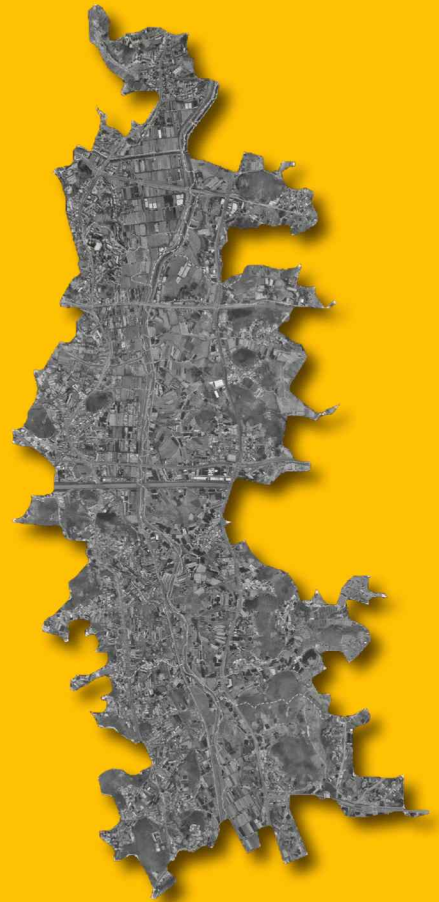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지침서
(제1권 : 일반지침)



2023. 2.

www.lh-urbandesign.org

목 차

제1장. 일반 규정	1
1. 공모 명칭	1
2. 공모 배경 및 목적	1
3. 공모 방식	1
4. 사용언어 및 단위	1
5. 공모 조직	1
6. 공모 일정	2
7. 참가자격 및 신청	3
8. 현장설명회	5
9. 질의접수 및 응답	6
10. 기술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6
1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6
12. 평가항목 및 심사방법	7
13. 심사결과 발표	9
14. 시상내역	9
15. 당선 이후 조건	10
16. 지적재산권 및 작품 이용 · 반환	12
17. 분쟁	13
18. 기타	13
제2장. 제출규정 및 제공자료	14
1. 작품제출	14
2. 익명성 유지	15
3. 제출물 및 작성기준	15
4. 제공자료	18

제1장. 일반 규정

1. 공모 명칭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2. 공모 배경 및 목적

- 본 공모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주거, 일자리,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도시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기본구상 아이디어 및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받기 위한 것으로
- 본 공모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테마, 상징성, 예술성이 가미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만의 차별화된 도시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자 함

※ 공모범위 : 대상지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구상, 특화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3. 공모 방식

공모 방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2항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으로 한다.

4. 사용언어 및 단위

4.1. 공식언어

- 4.1.1. 본 공모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이다.
- 4.1.2. 모든 제출도서는 '한국어'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영어' 표기도 가능하다.
- 4.1.3. 공모지침 및 질의응답 등에서 한국어본과 영어본 사이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한국어본을 우선으로 한다.

4.2. 계량단위

- 4.2.1.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용한다.
- 4.2.2. 공모지침서, 질의응답서 등에 언급되는 날짜와 시간은 한국표준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GMT+09)

5. 공모 조직

5.1. 주최자

- 5.1.1. 주최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공모의 재정을 조달한다.

5.2. 전문위원(Professional Advisor)

5.2.1. 성균관대학교 손세형 교수, 김지엽 교수를 전문위원(PA)으로 한다.

5.2.2. 전문위원의 역할

5.2.2.1. 공모 기획 및 추진 총괄

5.2.2.2. 참가신청 관리 및 질의접수·응답

5.2.2.3. 기술검토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지원

5.3. 운영위원회

5.3.1. 본 공모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공모 운영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5.3.2. 공식 홈페이지 : www.lh-urbandesign.org

5.3.3. 공식 E-mail : lh@lh-urbandesign.org

5.3.4. 모든 질의와 문의는 공모 홈페이지 및 공식 이메일을 통해 질의한다. 공모지침서에 대한 질의는 지정된 질의기간에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공모 관련 일반사항은 이메일로만 문의한다.

5.3.5. 운영위원회는 공모 진행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5.3.6. 참가자는 공모 진행기간 중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운영위원회에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6. 공모 일정

6.1. 공모 추진일정

6.1.1. 공모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다.

추진 일정	일 시	비 고
공고	2023년 2월 10일(금)	
참가신청	2023년 2월 10일(금) 10:00 ~ 2023년 2월 20일(월) 17:00	구비서류 방문접수 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현장설명회	2023년 2월 17일(금) 10:30	
질의접수	2023년 2월 20일(월) 10:00 ~ 2023년 2월 24일(금) 15:00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질의게시판에 작성
질의회신	2023년 3월 3일(금) 15:00	홈페이지에 일괄 배포
작품접수	2023년 4월 20일(목) 10:00 ~ 15:00	
심사결과 발표 (예정)	2023년 4월(예정)	각종 일간지 및 홈페이지

6.1.2. 공모 추진일정은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한다.

7. 참가자격 및 신청

7.1. 참가자격

7.1.1. 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공동 응모 시 공동 응모업체의 등록사항의 합이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단, 국외업체(국외면허 소지자)는 단독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업체(국외 참가업체는 동일분야의 국내업체와 공동응모 필수)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7.1.1.1. [도시계획분야]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① (국내업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② (국외업체) 해당 국가에서 도시계획 분야의 사무소로 적법하게 등록되었거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이어야 한다.

7.1.1.2. [조경분야]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① (국내업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조경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조경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② (국외업체) 해당 국가에서 조경분야의 사무소로 적법하게 등록되었거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이어야 한다.

7.1.1.3. [건축분야] 국내업체인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국외업체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건축분야의 사무소로 적법하게 등록한 업체

7.1.1.4. [정보통신분야]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7.1.2. 한 개의 업체는 한 개 팀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팀의 대표자는 국내업체여야 한다.

7.1.3. 당선작에 대하여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기본계획용역” 수행권을 부여하므로 참가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해당용역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단, 국외업체(국외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용역계약 시 대한민국 업체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해야 하며, 주최자와의 계약당사자는 국내 사업자로 하여야 한다.

7.1.4. 국내업체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등급은 특급,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등급은 중급 이상으로 구성하되(건축분야의 경우 책임기술자는 건축사, 참여기술자는 건축사보 이상), 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전문분야 등급으로 증빙하여야 한다.(증빙 미제출 및 제출한 증빙과 상이할 경우 평가에서 배제)

- 7.1.5. 참가신청 시 제출한 국내업체의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명단은 이후 계약착수까지 변경할 수 없다.
- 7.1.6. 2개 이상의 응모업체로부터 응모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재공고를 시행하고, 재공고 시에도 2개 이상의 신청이 없는 경우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한다.
- 7.1.7. 2개 이상의 응모업체 신청이 있었으나, 2개 이상의 유효한 공모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모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7.2.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

- 7.2.1. 2인 이상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한다.
- 7.2.2.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6인 이내로 한다.
- 7.2.3.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단, 분담이행방식은 최소지분을 적용 제외)
- 7.2.4. 공동응모를 할 경우는 대표자(1인)를 선임하여야 하며, 상기 7.1.1.1.[도시계획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국내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한다.
- 7.2.5. 대표자는 본 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7.2.6. 대표자는 공동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분담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7.2.7.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계약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7.2.8. LH 단지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공동계약 운영지침에 따라 '22.7.12 공고된 아래의 상위 4순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한다.

※ 본 공모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기회 제공 등 공정하고 상생협력하는 발주·입찰 문화조성을 위하여 수주실적 상위 4순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공동 및 분담이행)을 제한함.(해당업체는 단독 또는 순위 외 업체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

- 해당업체 : (주)도화엔지니어링, (주)유신, (주)건화, (주)한국종합기술

* LH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lh.or.kr>) / 공지사항 / 단지분야 건설엔지니어링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업체공고(2022.7.12.) 참고

7.3. 참가제한

- 7.3.1. 주최자(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속 직원
- 7.3.2. 공모 운영위원회 구성원
- 7.3.3. 전문위원
- 7.3.4. 공모일에서 계약체결일까지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휴업,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4. 참가신청 기간 및 방법

7.4.1. 신청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10:00 ~ 2023년 2월 20일(월) 17:00

7.4.2. 신청방법 : 구비서류 방문 제출 후 공모 공식 홈페이지 등록(기본사항 기입, 응모신청접수증 및 구비서류 1식 업로드 등)

7.4.3. 구비서류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1처(본관 13층)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문의 055-922-3830)

7.4.4. 구비서류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서식 4)	1부
· 공모 응모신청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각 1부
· 위임장(서식3)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각 1부
· 참여업체 명단(서식 6)	1부
· 참여기술자 조직표(서식13)	1부
·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1부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 대표자 선임서 (서식7)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서식8)	1부
·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서식14)	1부
· 대표자 인감	1부
· 청렴서약서(서식9)	1부

※ 국외업체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인정되는 서류(사본) 제출(당선업체는 추후 원본 제출)

7.4.5. 참가신청을 완료한 참가자는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7.4.6. 대표자는 참가신청 기간 이후 변경할 수 없다. 단, 공동참여사는 참가신청 마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15:00까지 교체·추가·삭제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변경기한내 7.4.2.항, 7.4.3항의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7.4.7. 공모 응모신청서 제출 후 작품 접수일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응모신청자는(응모신청서에 공동응모자로 기재 후 작품접수에 참여하지 않는 자 포함) 작품접수일로부터 1년간 (공고일 기준) 우리공사에서 공고하는 설계공모에 참여를 제한한다. 단, 공모 응모신청서 제출 후 7.3.4.항에 해당하는 참가제한 사항이 발생하여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하지 않는다.

8. 현장설명회

8.1.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10:30

8.2. 장소 : LH 경기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 319호

8.3. 참석신청

8.3.1. 참가사의 현장설명 참석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공모의 배경과 목적, 계획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므로, 참석을 권장한다.

8.3.2. 신청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10:00 ~ 2023년 2월 15일(수) 15:00

8.3.3. 신청방법 : 공식 이메일(lh@lh-urbandesign.org)로 신청

9. 질의접수 및 응답

9.1. 일정

9.1.1. 질의접수 : 2023년 2월 20일(월) 10:00 ~ 2023년 2월 24일(금) 15:00

9.1.2. 질의응답 게시 : 2023년 3월 3일(금) 15:00

9.2. 접수방법 : 공모 공식홈페이지(www.lh-urbandesign.org) 내 '질의응답' 게시판에 작성

9.3. 응답방법 : 응답일시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질의응답서' 게시

9.4. 기타사항

9.4.1. 질의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www.lh-urbandesign.org)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전화질의는 받지 않는다.

9.4.2. 질의에 대한 응답은 공모지침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며, 본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0. 기술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10.1.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

10.1.1. 기술검토를 위한 기술검토위원회는 사업추진 부서의 실무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10.1.2. 전문위원은 기술검토에 참여하며, 운영과 검토를 지원한다.

10.2. 기술검토위원회의 운영

10.2.1. 기술검토위원회는 제출된 작품에 대한 공모지침 및 사업부지의 정량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한다.

10.2.2. 기술검토위원회 사전검토 결과는 응모업체별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를 대신하여 사전검토결과를 확인할 경우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서식3)

1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11.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1.1.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15인으로 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11.1.2. 심사위원회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 종료시까지 위원들의 외부접촉을 금지시킨다.

11.1.3. 공정한 심사 운영을 위하여 심사과정을 녹화 또는 인터넷 생중계하며,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심사 시행 전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사용 등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서식17)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입찰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참가업체는 작품제출일에 동의서 제출)

11.1.4. 심사위원 대상자는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예정이다.

12. 평가항목 및 심사방법

12.1. 평가 착안사항

12.1.1. 심사평가 시, 다음의 제안내용별 주요도를 고려한다.

제 안 내 용		주요도
1. 도시기본구상		60
- 도시비전 및 개발컨셉		
-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구상		
- 도시공간계획 구상(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건설 및 생활권계획)		
- 부문별 계획(교통 보행동선, 공원녹지 하천, 경관·에너지·친환경, 스마트도시)		
- 주변지역 연계방안		
- 입체적 디자인가이드라인		
2.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		40
-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컨셉 및 전략, 도시공간 환경계획)		
- 부문별 계획(교통 및 동선, 공원녹지 및 외부공간)		
- 건축물 계획		

12.2. 심사방법

12.2.1. 심사는 토론을 통한 투표로 진행한다.

12.2.2. 심사는 공모배경 및 지침 설명으로 시작한다.

12.2.3. 심사 시에는 기술검토위원회에서 제출한 기술검토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한다.

12.2.4. 5작품 이상 응모 시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4개 이내의 작품에 대해서 참가업체 작품발표를 진행하며, 장소와 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12.2.5. 심사위원회는 입상작의 선정 이유와 심사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총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심사위원은 작성된 보고서에 서명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2.3. 참가업체 작품발표 방법

12.3.1. 발표는 기 제출된 도판 및 계획설명서만을 사용한다.

12.3.2. 발표시간은 작품별 20분을, 질의시간 15분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2.3.3. 발표자는 팀원 중 1인이 대표로 하고, 배석자는 발표자 포함 총 6인 이내로 한다.
- 12.3.4. 발표자 및 배석자는 공모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하여 조직표(15.1.1.2.①항)상에 등재된 직원에 한하며, 발표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위임장(서식3),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12.3.5.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참가업체 추첨으로 결정한다.
- 12.3.6. 발표자 및 배석자는 발표당일 발주자의 별도 공지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발표대상에서 제외한다.
- 12.3.7. 발표자가 익명성을 저해하는 표현,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기 제출한 발표자료 외 내용 설명, 시간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심사위원장은 즉시 발표를 중지할 수 있다.
- 12.3.8. 발표자가 제안발표 중 익명성을 노출한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한다.
- 12.3.9. 응모업체는 심사위원대상자에게 제출작품에 대한 사전설명을 금지하며, 작품심사 시 심사위원 개별적으로 사전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 사전 설명이 있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배제된다.

12.4. 실격

- 12.4.1. 참가업체의 자격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 12.4.2.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작품
- 12.4.3. 참가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12.4.4. 제출안이 다른 작품을 모방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12.4.5. 제출안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안(UCP안) 및 사업지구 관련 각종 특화 용역 내용과 동일하거나 모방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 12.4.6. 비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 비리·부정행위를 행한 업체는 아래의 표와 같이 실격 처리 및 공모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제재(실격)사유	공모참여 제한기간
1. 심사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 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제재 결정일로부터 6개월
2.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제 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제재 결정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4.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재 결정일로부터 2년

- 사전접촉 : 위원선정 이후 심사개최전까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자신 또는 공모 관련 존재 자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접촉 포함).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사전설명 : 공모공고에서 심사개최전까지 심사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정보통신기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공모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말 또는 부동산자 설명, 문자메시지, SNS 전달 등)하는 행위 일체(제3자에 의한 사전설명 포함).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방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 업체가 소속직원의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는 실격 처리 및 공모참여 제한기간이 적용된다.
- ※ 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가 비리·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공동응모업체의 작품은 실격처리된다.
- ※ 비리·부정행위가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전 또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발견되더라도 「심사평가 소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거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결정일로부터 공모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 ※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 참고
- ※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은 별표 2 참고

13. 심사결과 발표

13.1. 결과발표

- 13.1.1. 심사결과는 심사종료 이후 공모일정에 따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최우수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 13.1.2. 발표일은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

14. 시상내역

14.1. 시상 및 설계용역 내용

- 14.1.1. 입상자별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상 및 설계용역 내용(제세금 포함)
최우수 (1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기본계획용역 수행권(약 169억원) 및 MP 자격 부여
우수 (1점 이내)	상금 1억 원
장려 (2점 이내)	상금 각 7천만 원

- ※ 기본계획용역 금액은 용역 착수시 LH 계약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되는 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정산 될 예정이다. 공모 참가자는 참가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4.1.2.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최우수작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최우수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시상내역은 심사결과 및 사업추진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4.1.3. 당선업체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 순으로 동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14.1.4. 상금에 대한 세금은 국내의 세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14.1.5. 상금은 대표사에게 지불한다.

14.2. 입상의 무효

14.2.1.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에 위배되었거나 제출서류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모방작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상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

15. 당선 이후 조건

15.1. 당선자의 보상 및 조건

15.1.1. 최우수 수상자는 주최자(LH)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기본계획용역' 계약체결의 우선협상권을 가지며, 과업내용서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5.1.1.1. '기본계획용역' 계약은 상기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하며, 수의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 등은 우리공사 수의계약업무지침에 따른다. 다만, 당선자가 수의계약에 불응하거나, 수의계약이 불가할 경우 차순위 작품순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업체 보상비는 당선자에게 지급된다.

<용역개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명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기본계획용역·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과업면적 : 12,711천㎡(384만평)· 과업내용 : 기본계획, 개발사업 경관계획, 경관상세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조경기본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송전선로 조사 및 계획, 교육환경평가, 콘텐츠 제작 및 홍보동영상(VR구축 등), 농지·산지전용협의도서 작성, 도시 디지털트윈 제작 및 제작 및 활용, 관리용역·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2개월 [본 용역 (36개월) / 관리용역 (36개월)]· 설계금액 : 16,858백만원(추정가격 15,325백만원, 부가가치세 1,533백만원)
※ 설계금액은 당선작 선정 후 수의시담 등 계약체결 시, 변경될 수 있음 |
|--|

15.1.1.2. 국내업체의 참여기술자의 구성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르며 계약 시 용역계약 조건사항으로 명시되며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성 명 :			
기술등급 : 자 격 증 :			
회 사 명 :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자		조경분야 책임기술자		스마트시티분야 책임기술자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분야 참여기술자		조경분야 참여기술자		스마트시티분야 참여기술자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도시계획분야 실무기술자		조경분야 실무기술자		스마트시티분야 실무기술자		건축분야 실무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만 가능, 참여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이상만 가능

* 스마트시티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공간계획(도시계획) + ICT(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융합배치, 예) 스마트시티분야 책임기술자가 도시계획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 정보통신 기술자를 포함하며, 정보통신 분야가 책임기술자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 도시계획 분야 기술자 포함.

- ②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동일용역 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④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 구성 비율은 과업업체별 참여 지분율대로 하고 참여기술자 인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실무기술자)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 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등급은 특급,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등급은 중급 이상으로 구성하되(건축분야의 경우 책임기술자는 건축사, 참여기술자는 건축사보 이상), 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인증한 증빙서류(건축분야의 경우 관련자격증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5.1.1.3. '기본계획용역'의 계약체결 기간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그 기간 안에 최우수 수상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주최자는 최우수 수상자에게 차순위업체 보상비를 지급하고 차순위자와 '기본계획용역'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 15.1.1.4. 참여업체는 계약내용이행 완료시까지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지 못한다.
 - 15.1.1.5. 각 용역의 용역계약 체결 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대표자 및 공동참여자 모두의 동의와 주최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공동참여자 구성원 및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
 - 15.1.2. 최우수 수상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주최자는 차순위자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한다.
 - 15.1.3. 공모공고시 제시된 금액은 용역대가 산정을 위하여 추정된 금액이며, 동 공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2항에 따른 설계공모임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 관련절차(수의시담 등)에 의거 계약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15.1.4. 계약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규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당선자가 수행할 과업의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를 따른다.
 - 15.1.5.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내용서에는 추후 당선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한다. 참가신청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
 - 15.1.6. 본 공모지침과 과업내용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 15.1.7. 주최자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 15.1.8. 최우수작의 대표사는 참여사의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자(사업, 분야) 중 1인을 MP(Master Planner)로 지정한다. 지명된 MP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MP협의체에 위촉된다.
 - 15.1.9. MP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의거하며 해당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환경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유지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의 자문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15.2. 계약자의 용역 범위

- 15.2.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기본계획용역'의 과업범위(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15.1. 당선자의 보상 및 조건과 같다.
- 15.2.2. 세부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시 과업내용서에 의한다.

16. 지적재산권 및 작품 이용 · 반환

16.1. 일반사항

- 16.1.1. 참가사(팀)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참가자(팀)에게 있고, 이로 인해 주최자나 그 밖의 제3자가 입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발주기관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
- 16.1.2. 응모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사(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주최자는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사(팀)와 별도로 약정한다.
 - 16.1.3. 다만 주최자는 모든 응모작품에 대해 참가사(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출판·전시·홍보·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복제·전시·배포·대여·공중송신·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비영리적,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참가사(팀)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6.1.4. 제출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 16.1.5.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17. 분쟁

- 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해당지역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18. 기타

18.1. 심사위원 제척·기피신청

- 18.1.1. 응모업체는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자를 심사주관부서에 제척 및 기피 신청(서식15)을 할 수 있다.
- 18.1.2. 제척·기피 신청시에는 심사위원 제척·기피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8.1.3. 제척·기피 신청기한(공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내에 신청하지 않은 응모 업체는 추후 심사위원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8.2.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 참여

- 18.2.1. 공정한 심사진행과 청렴한 심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사위원 사후평가* 및 청렴도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심사후에 응모업체 심사참여자가 심사평가위원의 성실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평가

- 18.2.2. 공모참여사는 소속 직원 중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자로 가장 적합(심사과정,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 등 심사 전 과정을 확인한 자)한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16)를 제출하며, 해당 직원은 비계량 심사후 LH가 위탁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사후평가 설문자를 각각 선정. (참가업체는 작품제출일에 동의서 제출)

제2장. 제출규정 및 제공자료

1. 작품제출

1.1. 제출일자 : 2023년 4월 20일(목) 10:00 ~ 15:00

※ 제출시간 이후에 도달된 작품은 접수하지 않는다.

1.2. 제출장소 :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1.3. 제출시 구비서류

1.3.1. 제출서류 1식

- 공모 작품제출서(서식5) 1부
 - 작품활용 및 변경동의서(서식10)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공모참여업체용)(서식16) 1부
 -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서식 17) 1식
- * 작품발표일 참가자 전원(작품 발표자 및 배석자) 작성-제출

1.3.2. 기타

- 공모기간 중 1.3.1항의 제출서류 이외 추가서류[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모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1.4. 제출물

1.4.1. 도판 (A0 5매) 1식

1.4.2. 계획설명서(A3 단면 55면 이내) 30부

1.4.3. 전산자료(USB 2개) : 도판 파일(개별 이미지파일 포함), 계획설명서 파일, 제출서류(스캔본), 조감도 등 이미지 자료 수록

1.5. 제출시 주의사항

1.5.1. 1개의 팀은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한다.

1.5.2.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제출장소에 직접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5.3. 응모신청(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1.5.4. 접수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1.5.5. 참가업체는 본인이 선택한 고유번호를 서식 양식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표기하여야 한다.

1.5.6. 주최자는 접수 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한 작품분실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2. 익명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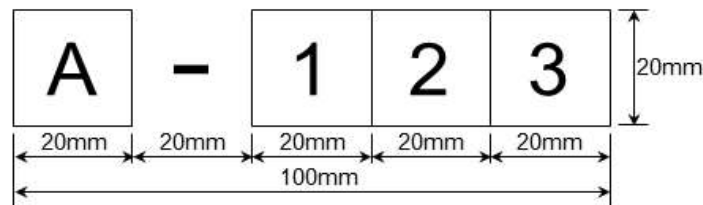
2.1. 유의사항

- 2.1.1.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결과 발표 전까지 참가업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출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 2.1.2. 최종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작품은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참가업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등록 시 선택한 고유번호를 모든 제출물에 표기한다.
- 2.1.3. 제출물에는 고유번호 외에 참가업체의 신원을 알리는 어떠한 문구나 기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1.4.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표기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등 공인증명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 주민등록번호는 900101-1*****

2.2. 고유번호 기재방법

- 2.2.1. 고유번호는 알파벳 1자와 아라비아 숫자 3자로 구성된다.
- 2.2.2. 고유번호는 참가신청 시 등록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 2.2.3. 고유번호는 아래의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기하고 폰트는 'Arial'로 한다.

[고유번호 양식]



- 2.2.4. 각 제출물에 고유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2.2.4.1. 설계도판에는 도판 뒷면의 우측 상단에 표기한다.
 - 2.2.4.2. 계획설명서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 공란에 표기하며, 제출되는 30부 중 1부에만 고유번호를 표기하고, 나머지 29부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 2.2.4.3. USB에는 몸체 자체에 표기한다.

3. 제출물 및 작성기준

- 불필요한 건축 입면계획 및 조경계획 등 실사 이미지는 지양하고, 공간구조와 건물 볼륨을 나타낼 수 있는 심플하고 간결한 매스 위주의 표현을 권장함.

3.1. 제출물의 종류

구분	규격(mm)	수량	비 고
도판	A0(841×1,189)	1식	- 폼보드 10mm - A0 × 5페이지
계획설명서	A3(420×297)	30부	- 단면 55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 간지 등 제외)
USB	-	2개	- 도판 및 계획설명서, 제출서류(스캔본) 등 모든 관련 데이터 수록

3.2. 제출물 작성요령

- 3.2.1. 모든 도서에는 작성자를 알아 볼 수 있는 로고, 인식물 등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
- 3.2.2. 표기는 한글 또는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 3.2.3. 주거동과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시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 3.2.4.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축적, 방위, 면적은 정확히 표시한다.
- 3.2.5. 제출된 도서는 수정·변경 및 보완작업과 추가제출을 할 수 없으며 제출된 도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 3.2.6. 작품제출 시 구비서류 이외의 모든 제출도서(계획설명서, 도판)는 제출도서 종류별로 박스포장하며, 겉포장에는 응모신청 시 고유번호를 표기하고 안포장에는 일체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3.3. 도판

- 3.3.1. 규 격 : A0 사이즈 841mm X 1,189mm (5매 구성)

[설계도판 앞면]



[설계도판 뒷면]



3.3.2. 도판 재질 : 10mm 폼보드 위 무광 인화지

3.3.3. 색상사용기준 : 칼라표현을 허용한다.

3.3.4. 도면의 방위 : 도판 상단이 정북이 되도록 한다.

3.3.5.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도판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권장한다.

[설계 도판 포함 내용]

종 류	작 성 내 용
도판 1 도판 2 도판 3	다음의 필수 기입 요소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구상을 설명하는 요소로 구성하여 작성 1. 도시 비전 및 개발컨셉 2.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구상 3. 토지이용계획 4. 인구·주택건설 및 생활권 계획 5. 교통 보행동선계획 6. 공원녹지 하천계획 7. 경관, 에너지 및 친환경 계획 8. 스마트도시계획 9. 주변지역 연계방안 10. 입체적 디자인가이드라인
도판 4 도판 5	참가사가 제안하는 특화구역의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개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필수 기입 요소를 포함하여 작성 1. 컨셉 및 전략 2. 도시공간 환경계획 3. 교통 및 동선계획 4. 공원녹지 및 외부공간 계획 5. 건축물 계획

3.4. 계획설명서

- 3.4.1. 표지 : 배포되는 동일 양식(서식 12)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3.4.2. 규격 : A3(420mm×297mm) 크기로 제작한다. 필요시 A2(594mm×420mm)규격 이하의 범위내에서 규격을 초과할 수 있으며, 규격이 초과할 경우에는 A3규격으로 접어서 제본하며 이는 2페이지로 간주한다.
- 3.4.3. 재질 : 백상지
- 3.4.4. 제본 : 가로방향 좌편철, 무선제본
- 3.4.5. 색상사용기준 : 칼라표현을 허용한다.(단 표지는 제외)
- 3.4.6. 제안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제안자의 의도전달이 용이한 형식으로 '세부 계획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구 성 항 목	페이지수
1. 도시기본구상(안)	35페이지
2. 특화구역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	20페이지

- 3.4.7. 제안 설명서의 전체분량은 단면 55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설계자에 따라 상기 구성항목별 5페이지 범위 내 조정가능하다.
- 3.4.8.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간지는 목차상의 내용만 가능하고 기타 삽도나 디자인은 포함하지 못한다.
- 3.4.9.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모든 면에 페이지 연번을 표시한다.(인쇄내용이 없는 면을 구성하지 않는다)
- 3.4.10. 그 밖에 '관련규정 및 계획지침 검토서(서식 11 참조)'를 계획설명서 마지막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및 계획지침 검토서'는 쪽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제공자료

4.1. 자료제공 시기

- 4.1.1. 공모지침서는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 4.1.2. 세부 계획지침 등 사업대상지 관련 제공자료는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관리자 승인을 받은자)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 4.1.3. 공모지침서 및 서식을 제외한 제공자료는 국문으로만 제공한다.

4.2. 사업대상지 관련 제공자료 목록

- 4.2.1. 국토교통부 관련 자료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자료

번호	항목	비고
1	지구지정 보도자료 및 관보 고시자료	.pdf

4.2.2.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자료

번호	항목	비고
1	세부 계획지침	.pdf / 계획지표, 작성항목별 세부 계획지침, 필수 고려사항 등
2	경계설정사유도 등	.dwg / 경계설정사유도, 수치지형도 등
3	사업지구 현황도	.pdf / 대상지 및 주변 현황도
4	현황사진	.pdf
5	동영상	.mp4 / 대상지 항공촬영
6	광역교통계획(안)	.jpg / 광역교통계획(안)
7	UCP 주요내용	.pdf
8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	.pdf
9	재해영향성검토 자료	.pdf
10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	.pdf
11	지구지정(안)	.pdf
12	지형도면고시도	.dwg
13	용역 과업내용서	.hwp / 도시기본구상(기본계획 등)용역 과업내용서
14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pdf
15	안양천 하천기본계획	.pdf

※ 관련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는 개별적으로 참조할 것.

4.3. 관련서식

번호	항목	비고
1	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위임장	서식 3
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4
5	공모 작품제출서	서식 5
6	참여업체 명단	서식 6
7	대표자 선임서	서식 7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서식 8
9	청렴서약서	서식 9
10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	서식 10
11	관련 규정 및 계획지침 검토서	서식 11
12	계획설명서 표지서식 및 고유번호 표시위치	서식 12
13	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 13
14	공정거래 이행 약속서	서식 14
15	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서식 15
1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공모참여업체용)	서식 16
17	심사실태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서식 17

[서식 1] 공모 응모신청서

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 고유번호				
대표사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소 재 지		E - Mail주소	※ 상시 확인가능한 번호기재
	담 당 자		전화번호	※ 상시 연락가능한 번호기재
공동 응모사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소 재 지		E - Mail주소	※ 상시 확인가능한 번호기재
	담 당 자		전화번호	※ 상시 연락가능한 번호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에 응모함에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응모 및 작품제출 할 것을 약속하며, 작품 미제출시에는 작품접수일로부터 1년간 LH 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공모의 참여 제한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공동이행 응모가 1명 이상인 경우 공동응모사란을 추가하여 참여업체 모두 기재 2023 . . . 신 청 인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절 ----- 취 ----- 선 -----

응 모 신 청 접 수 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 고유번호		
공 모 명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대표사명	대표자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1처	

※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비워둠

접 수 일 : 2023. . .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
제공모』에 응모함에 있어서 구비서류 허위 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공되는 도서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대외비로 관리하며, 자료
유출에 따른 사회적 물의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아니함을 서약합니다.

20 .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 (전체 구성원 작성 필요)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전화번호)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사 장 귀하

[서식 3] 위임장

위임장

☐ 공모명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 대리인(수임인)

- ① 소 속 : (직위 및 직급 :)
② 성 명 : (인) (생년월일 :)
③ 주 소 : (전화번호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인

- ① 소 속 : (직위 및 직급 :)
② 성 명 : (인) (생년월일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첨부 : 대리인(수임인) 재직증명서 1부.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번호	구비서류	신청자 확인	접수자 확인
1	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1부		
2	서약서 (서식 2) 1부		
3	위임장 (서식 3)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해당 경우에 한함		
4	참여업체 명단 (서식 6) 1부		
5	참여기술자 조직표 (서식 13) 1부		
6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각 1부		
7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동참여의 경우 모든 참여사 제출)		
8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동참여의 경우 모든 참여사 제출)		
9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공동참여의 경우 모든 참여사 제출)		
10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사본 각 1부 (공동참여의 경우 모든 참여사 제출)		
11	대표자 선임서 (서식 7) 1부 ※ 해당 경우에 한함		
1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서식 8) 1부 ※ 해당 경우에 한함		
14	공정거래 이행 협약서 (서식14) 1부		
15	대표자 인감		
16	청렴서약서 (서식 9) 1부		

공모 작품제출서				※ 접수번호	
고유번호					
작품제목					
대표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제출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위와 같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지침에 따른 작품제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사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귀하					
제출서류 1. 공모 작품제출서 1부 2.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공모참여업체용) 1부 4.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1식			제출물 1. 도판 1식. 2. 계획설명서 30부. 3. USB 2개.		

공모 작품제출서 접수확인증				
고유번호		※ 접수번호		접수인
대표사명		대표자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1처			

- 24 -

[서식 6] 참여업체 명단

참여업체 명단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에 아래와 같이 공동참여사 명단을 제출합니다.

☐ 대표사

회사명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참여사 명단 (단독참여일 경우 공란)

분야	회사명 / 대표자	자격 및 면허사항	연락처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대표자 선임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 업체명 :

소 재 지 :

지 분 율 :

상기인을 귀 LH에서 시행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에 대한 아래의 공동응모업체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하여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업체명 :	(지분율 : %)	대표 :	(인)

※ 한 업체에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모두 직인날인 하여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 ○ 회사(대표자:)
2. ○ ○ ○ 회사(대표자:)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 ○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 (인)

○○○ (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 ○ 회사(대표자 :)
2. ○ ○ ○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 ○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 . .
 ○ ○ ○ (인)
 ○ ○ ○ (인)

[서식 9] 청렴서약서

청 령 서 약 서

당사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심사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 향응 및 부당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공모에 향후 2년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약금 부과 처분시 지정된 기일내(제재결정 통보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약정하며, 납부한 위약금이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됨에 동의합니다.

(단, LH가 지급해야 할 신고포상금이 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사

대 표 자 : (인)
소 속 : (전화번호)
소 재 지 :

○ 공동참여사

대 표 자 :	(인)	대 표 자 :	(인)
소 속 :		소 속 :	
소 재 지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대 표 자 :	(인)
소 속 :		소 속 :	
소 재 지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소 속 :
소 재 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1] 관련 규정 및 계획지침 검토서

관련 규정 및 계획지침 검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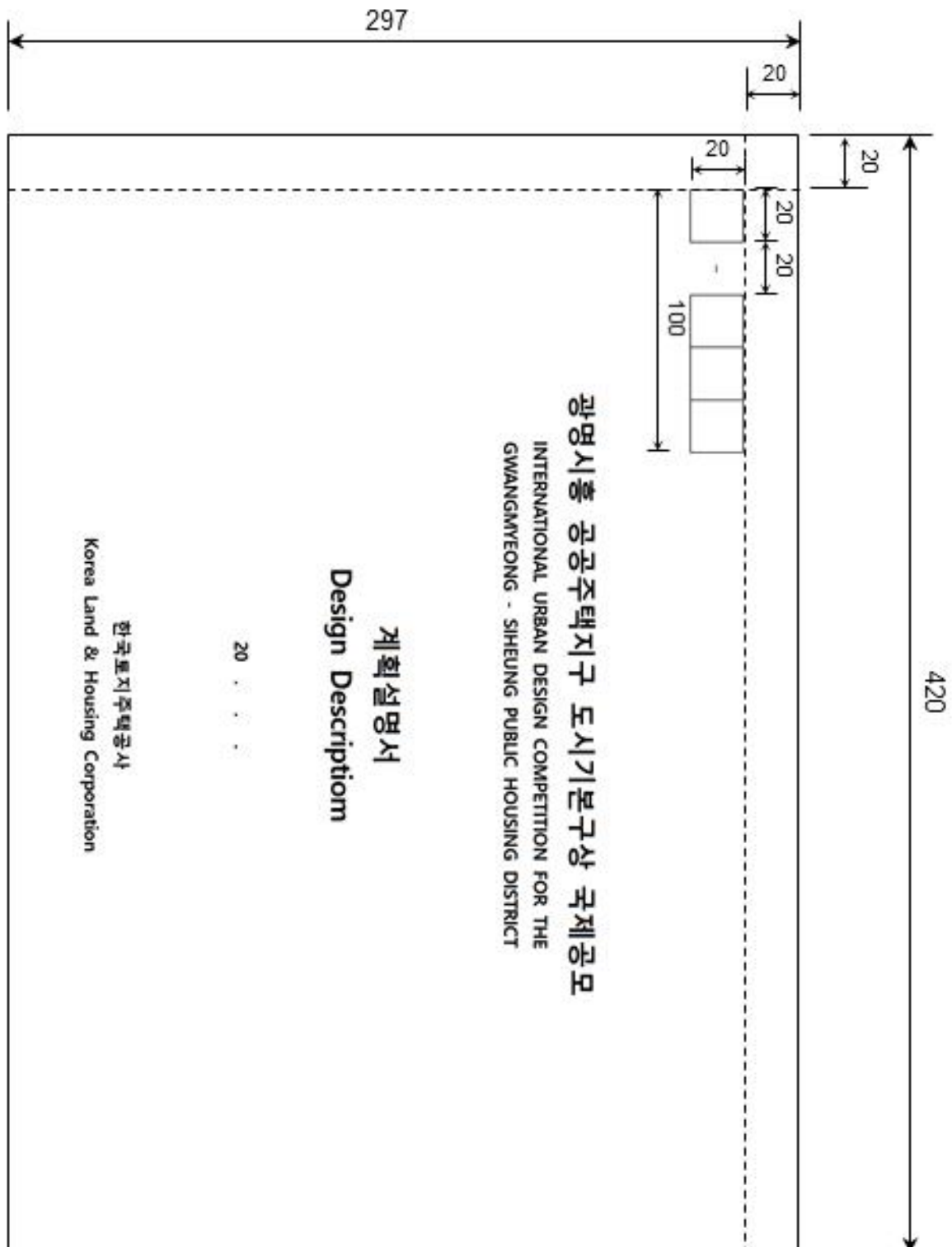
□ 공모명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구 분	대 상	법규명, 조항 및 계획지침 항목	법적 및 지침 기준	설 계 기 준	비 고
법적 필수 반영 항목	(작성예시) 공공주택건설 비율	공공주택특별법 제0조, 시행령 제0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0조 ⋮		00.0%	
	공공시설용지 계획기준	000000			
	지구계획 지표기준	지자체 조례			
	⋮	⋮	⋮	⋮	⋮
계획 지표	토지 이용 계획	공원녹지	세부 계획지침 #.		
		도시지원시설용지	세부 계획지침 #.		
		교육시설용지	세부 계획지침 #.		
		상업시설용지	세부 계획지침 #.		
		주차장용지	세부 계획지침 #.		
		⋮	⋮	⋮	⋮
	인구 주택 계획	지자체별 인구수 배분계획	세부 계획지침 #.		
		주택 유형별계획 * 단독, 공동, 근생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세부 계획지침 #.		
		⋮	⋮	⋮	⋮
		⋮	⋮	⋮	⋮
필수 고려 사항	000000	세부 계획지침 #.			
	000000	세부 계획지침 #.			
	000000	세부 계획지침 #.			
	000000	세부 계획지침 #.			
	⋮	⋮	⋮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					
관계기관(지자체 등) 협의의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협의의견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재해영향성검토(안)					
전략환경평가(안)					
⋮		⋮	⋮	⋮	⋮

※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해도 무방하며, 작성 페이지수 제한 없음

[서식 12] 계획설명서 표지서식 및 고유번호 표시위치

※ 제출되는 30부 중 1부에만 고유번호를 표기하고, 나머지 29부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서식 13] 참여기술자 조직표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성 명 :							
기술등급 :							
자 격 증 :							
회 사 명 :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자		조경분야 책임기술자		스마트시티분야 책임기술자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 사명		회 사명		회 사명		회 사명	

도시계획분야 참여기술자		조경분야 참여기술자		스마트시티분야 참여기술자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 사명		회 사명		회 사명		회 사명	

도시계획분야 실무기술자		조경분야 실무기술자		스마트시티분야 실무기술자		건축분야 실무기술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회 사명		회 사명		회 사명		회 사명	

- *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만 가능, 참여기술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이상만 가능
- * 스마트시티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공간계획(도시계획) + ICT(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융합배치, 예) 스마트시티분야 책임기술자가 도시계획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 정보통신 기술자를 포함하며, 정보통신 분야가 책임기술자인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에 도시계획 분야 기술자 포함.

[서식 14]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

공정거래 이행 약속서

당사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응모와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일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향후 제출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정되거나, 익명의 신고접수 또는 발주기관 자체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2조 2호에 의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응모참여(불공정 행위)로 판정될 시는 LH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간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2. 상세현황

응모 업체명	대표자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해당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붙임 : 해당업체 제출자료(상기 1호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업체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주명부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 회사 설립당시의 은행계좌 통장사본

20

업체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업체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업체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 공동응모 시, 모든 참여사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5] 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평가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확인)서

당사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선정된 평가위원 중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제척·기피를 신청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평가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척 신청(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위원명	근 무 처	근거 및 사유

※ 제척 사유

1.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에 따라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심의대상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5.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기피 신청(증빙자료 없이 5명 이내 신청하고 공통기피율 이상시 제척)

연번	분야	소속	성명
①			
②			
③			
④			
⑤			

20 . .

회사명 :

확인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공모참여업체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공모참여업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심사 참여자(이하 「참여자」로 약칭)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22조 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기술심사평가위원 사후평가]의 조사 참여를 위해 공사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공사는 참여자 정확한 조사 진행을 위해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참여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이나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1) 소속, 직급/직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방법

- 1) 서면

공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참여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가. 수집목적

- 1)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 후 검증용
- 2) 통계목적 자료처리
- 3) 2차조사
- 4)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인적사항 관리(참여기술인 제한 및 사육 출입금지 등)

참여자는 위와 같은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공모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

공사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수집한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가. 참여자가 사전에 공개하는데 동의한 경우

나.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인적사항 관리(참여기술인 제한 및 사육 출입금지 등)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17]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 용역 및 민간사업자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에 관하여 공정·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실황을 촬영, 저장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인터넷 중계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귀하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모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집한 범위를 넘어 본인의 과실로 공개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 침해 및 이에 따른 배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얼굴,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수집·이용 목적] 공사, 용역 및 민간사업자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 관련 활용

[이용 및 보유 기간]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 항목] 성명, 성별, 얼굴 등

[제3자 제공 목적] 심사실황 중계

[제공받는 자] 일반 시민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달성시 즉시 폐기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촬영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촬영한 방송영상물 일체(동영상 등 영상물, 이를 기획 및 편집하여 2차 생성되는 영상물 등)에 대하여 촬영자에게 본인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촬영자는 심사과정 공개 목적으로만 심사실황을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하며, 본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영상물 일체에 대한 편집 및 보정을 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기타 제반권리의 공개·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터넷 중계를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 허락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인터넷 중계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에 관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표 1]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위약금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금액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신고(SNS 포함) *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포함	• 1천만원 이하
심사와 관련한 심사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의 부정행위 및 비리행위 신고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 (뇌물, 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방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2천만원 이하 * 단, 금품수수(100만원초과) 및 담합은 3천만원이하 지급
- 해당 심사건의 신고포상금 총액은 상황별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 (단, 위반 업체의 위약금 납부 후 해당 금액내에서 지급)	

[별표 2]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심사위원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구 분	처벌기준
1.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 미신고(SNS 포함) 2. 제척대상 심사의 회피신고 위반 (용역수행실적 등)	· 3년간 LH 심사위원 자격 박탈 및 1년간 LH 사옥 출입금지
3.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부정청탁에 따른 권한 행사, 뇌물·금품수수 등)	· LH 심사위원 자격 영구박탈 및 2 년간 LH 사옥 출입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소속기관의 심사위원 추천권한 2년간 제한

[별표 3] 패널티 항목

패널티 항목

항 목			패널티
공모 지침 위반 사항	계획 지표	계획지표 위반시 (2권 세부 계획지침 / 3.계획지표)	0.2점 감점/건
	계획 설명서	지정 도서쪽수 초과시	0.1점 감점/쪽당 (최대0.2점)
		계획설명서 표지 작성위반 (배경무늬 및 특정그림 사용)	0.2점 감점
		규격 위반시	0.2점 감점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건 (최대0.8점)
	도판	도판 규격 위반시	0.2점 감점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건 (최대0.8점)
		내용 배치 방법 위반시	0.2점 감점
	소 계		최대 1점 이내
	제안 설명서 발표 중 익명성 노출		1점
제안 설명서 지정 도서쪽수 50% 미만			1점
총 계			최대 3점 이내

※ 감점 1점은 투표 감 1표로 환산, 소수점은 버림